

충청북도 건축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검토보고서



행정문화위원회

수석전문위원 신복순

충청북도 건축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

1. 발 의 자 : 조성태 의원 등 7인

2. 발의일자 및 회부일자

- 발의일자 : 2025년 4월 11일
- 회부일자 : 2025년 4월 14일

3. 제안이유

- 인용법령의 오기를 정정하기 위해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.

4. 주요내용

- 인용법령의 법령 오기를 정정(안 제8조, 안 제10조, 안 제12조)
 - 「충청북도 건축조례」 → 「충청북도 건축 조례」
 - 「충청북도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」 → 「충청북도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」
 - 「충청북도 보조금 관리 조례」 → 「충청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
-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띄어쓰기 정정(안 제8조)
 - 충청북도 건축위원회 → 충청북도건축위원회
- 운영상 미비점 보완(안 제10조, 안 제14조)

- 공무원이 아닌 사람 삭제
- 건축디자인조정위원회 → 충청북도 건축디자인조정위원회

5. 검토의견

- 본 조례안은 인용 법령의 명확한 표기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, 안 제8조, 안 제10조, 안 제12조 등에서 인용된 관련 법령의 명칭을 정확하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.
- 이번 개정조례안은 「충청북도 건축 조례», 「충청북도 각종위원회 설치비변상조례», 「충청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 등 인용 법령의 명칭을 정확히 반영하고, '충청북도 건축위원회' 등 일부 용어에 대한 띄어쓰기 정정을 통해 명확성을 제고하였음.
- 또한, '공무원이 아닌 사람'과 같은 중복 표현을 삭제하고, 위원회 명칭을 '충청북도 건축디자인조정위원회'로 명확히 기재함으로써 조례 운용상 혼선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 취지와 목적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.